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하상구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692 FAX 041-968-2989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권 두 언 제복 입은 시민의 역할

한국경찰학회 회장
장석현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칙 붕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성용

연구특집

경찰공무원의 유머감각과 직무열의의 관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임운식

현장의 소리 치안현장 속으로 (인터뷰)

강원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
장원영

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연구소 신임 하상구 소장 부임**

2018년 12월 26일자로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하상구 경찰수사연수원장이 부임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경찰청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북 경주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경험에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수사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는 등 업무에 정통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 시절에는 수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는 물론 외국 경찰을 초청하여 전문 수사 지식 등을 전파하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소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10. 24(수) 13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바비엡 교육센터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이상정 경찰대학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젠더 폭력과 경찰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갑룡 청장은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대응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고 하였고, 진선미 장관은 평소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념 촬영 장면 】

『1주제』 젠더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자	성평등진흥원 변현주 본부장
토론자	여성범죄근절추진단 이은구 경정 등 4명
『2주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경찰법제개혁팀장 이동환 총경
토론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4명

【 세미나 발표 주제 및 참석자 】

이동환 법제개혁TF팀장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이 젠더폭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위험을 즉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비교수사절차론」 발간



- ▶ 총 1천부 제작
- ▶ 수사절차상 선진국의 각 기관 역할 및 상호작용 기술

올해 초부터 치안정책연구소 집필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작성한 「비교수사절차론」이 발간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형사사법 절차와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등을 총망라한 수사절차에 대한 ‘국민 교과서’ 성격을 띤 단행본으로, 향후 국회와 정부, 학계를 비롯하여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등 내·외부에 적극 배부·활용할 예정이다.

◆ 2018년 하반기 치안정책연구소 워크숍

2018년 11월 29~30일(1박 2일)간, 충남 예산군 일원에서 치안정책연구소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 한해 주요연구사업 및 학술세미나 등의 성과를 점검했으며, 2019년 연구방향 설정을 포함 향후 연구소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 <치안정책연구> 제32권 3호 발간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등재 학술지 <치안정책연구> 제32권 3호를 3차에 걸친 편집회의를 통해 13편의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여 발간하였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통해 논문을 볼 수 있다.

연번	논문 제목
1	경찰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중심으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연구 - 검찰 송치 이후를 중심으로 -
3	아동성범죄자 출입·주거 제한지역의 공간적 반경 연구
4	대구지역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요인 분석
5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6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
7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8	드론의 물리보안 활용방안과 한계에 관한 고찰
9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10	비트코인(Bitcoin) 악용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1	군 사이버침해 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
12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연구
13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원본 PDF파일로 게시)

◆ 치안전망 2019 발간

2019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였다.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총 2천 5백부를 인쇄하여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며, 2018 10대 치안 뉴스를 선정하였고, 이외 분야별 치안 전망과 경찰의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논문모집 공고

□ 학술등재지 논문모집

○ 공모 기간

- 2019. 1. 28.(월)~4. 7.(일) <10주>
- ※ 2019년 5월말 발간 예정

○ 논문 접수 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사회안전, 교통, 안보대책, 치안과학 등 경찰 관련 분야

○ 응모 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 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전·현직 경찰관 등

○ 기타 사항

- 논문은 A4 기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글자크기 함초롱바탕 10.5P, 각주 9P)
- 내·외부 전문가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 지급(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
- ※ 투고논문은 다른 매체 또는 지면(학위논문, 용역과제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 문의처

- 치안정책연구소 조금희 연구관 (041-968-2492)

☆ 많은 응모 바랍니다**

「치안정책 리뷰」 원고 모집 공고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2019년 3월 15일까지 접수)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cisyjy@police.go.kr 또는 메신저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 (041-968-2692)

□ 치안정책연구리뷰 편집팀

- 강용길 연구관, 장일식 연구관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의 역할

한국경찰학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장석헌



들어가며

흔히들 경찰을 거리의 심리학자, 거리의 재판관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찰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을 합리적으로 분석·판단·결정하는 문제해결사 또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의 역할은 크게 법 집행, 질서유지, 사회봉사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법집행이란 범죄자를 검거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업무로서 형사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질서유지는 두 사람 이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무질서를 바로잡는 업무로서 경미한 범죄자를 비공식적으로 경고, 조언, 훈방함으로써 질서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봉사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기치아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경찰은 군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닌 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이 법집행과 질서유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사회봉사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본다. 역대 경찰청장들이 제시한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기치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의 임무 중 사회봉사와 관련된 것은 범죄예방과 피해자관련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활동을 소홀히 하면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피해자는 어느 정도 반비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범죄예방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경찰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초대 공동수도경찰청장인 메인(Richard Mayne)은 경찰의 1차적인 목적은 범죄예방이고 2차적인 목적은 범인검거와 범죄수사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범죄예방은 범죄수사와 형사사법절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없다.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초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시민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의 결과로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와 지역사회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이 경찰활동의 공동주체로서 범죄 및 무질서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trategy-oriented policing)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시간대나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범죄예방효과를 얻는 경찰활동으로 탄력순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으로 시민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경찰정책에 반영하는 경찰활동으로 시민경찰학교, 방범공청회, 치안정책 수립에의 시민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소극적·대응적 법집행보다는 지역사회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공격적·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경찰활동이다. 문제해결과정에는 에크와 스펠만(J.E. Eck & W. Spel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탐색(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라는 4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지역사회에서 우범지역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범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CCTV 설치 등 대응한 후 그 장소에서 다시 범죄가 발생하는가 혹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예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무질서, 지역사회 문제 등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과거의 소극적, 대응적인 활동을 불식하고 적극적, 예방적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범죄 및 무질서 그리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협력과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치안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0년대 중반 미국 뉴욕시 경찰국에서 전개된 무관용 경찰활동은 뉴욕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37%의 범죄감소율을 나타냈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관용 경찰활동을 전개하여 사소한 무질서와 경미한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한 결과,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야기하여 지역사회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관용 경찰활동보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 예방에 치중하여 사회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도 안전한 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CPTED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불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1세대 CPTED, 주민참여를 통한 2세대 CPTED, 스마트치안 및 ICT기법을 통한 3세대 CPTED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CPTED는 외부침입자를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집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2세대 CPTED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세대 CPTED는 환경과 공간을 강조한다면 2세대 CPTED는 이웃감시제도와 같이 사회적 응집력을 강조하

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범죄예방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3세대 CPTED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규정하여 입체적으로 범죄예방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입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회적 약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피해를 당하여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잊혀진 존재로서 참고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범죄발생 책임과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가해자의 양형을 결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2017년의 경우 가해자의 교정시설의 예산은 1조 4천억원이었으나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보호기금은 1,000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법체계에 있어서도 강간죄(형법 297조)의 경우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피해자인 상대방의 동의여부라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형사사법기관 중 범죄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은 경찰이다. 경찰은 긴급성과 현장성을 살려서 범죄현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가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면 상담지원을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의료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은 2015년부터 4대 사회악의 근절정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가해자는 처벌하면 되지만 피해자는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임을 인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에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지방청에 피해자보호계,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여 2018년 4월에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의 임무조항에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된 인력, 예산,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함께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구분하여 경찰고유의 업무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란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 수사 및 재판과정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형사절차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뿐만 아니라 지원을 포함한 업무전반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단계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범죄피해자 보호에 국한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든가 아니면 연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대상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대인범죄에 국한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재산범죄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인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의 주관 하에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밖에 있고 유족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는 직접 지원서비스, 연계 지원서비스, 선택 지원서비스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은 긴급성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 지원서비스는 피해자의 욕구파악을 하는 초기상담, 임시숙소 제공, 신변보호, 수사관련 정보 제공 등이고 민간단체와 연계 지원서비스는 법률적 지원, 의료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며 선택 지원서비스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장기상담, 재판 시 법정동행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이 직접 지원서비스에 국한하여 경찰의 인력과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오며

이상에서와 같이 경찰이 최선의 사회봉사기관으로서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가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시민과의 협력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이러한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경찰은 24시간 활동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경찰서비스이용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 둘째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경찰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최일선에서 활동하므로 문제있는 시민을 체포하기 보다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찰의 사회봉사활동은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의 사회봉사활동의 개념과 영역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복입은 시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PSI**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칙 붕괴¹⁾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강성용 연구관

들어가며

“모든 인간들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치 않다. 만약에 천사들이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는 필요치 않다… 정부의 핵심은 권력이다;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진실은 모든 권력자들은 불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4번째 대통령 James Madison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James Madison이 우려한 정부의 권력—그 중에서도 형사사법권력—남용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에서는 범죄 통제의 효율성보다는 절차의 적정성을 중요시하고, 동 적정 절차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기능에 따른 권력분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른다. 정부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동 원칙에 따른 적정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받고, 공평한 법적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절차로서 형사사법절차가 기능적 권력분리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독점적·지배적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임의적인 권력의 과도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법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에 따른 권력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은 시간적·공간적 특성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각 국가 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what the law ought to be)에 대한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자연법(natural law)으로 확립되어 왔다. 그리고 형사법의 집행은 인간의 자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 수단으로, 다른 어떠한 법의 집행보다도 임의적 국가 권한 남용으로 인한 침해되는 이익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은 형사법 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현대 형사사법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탄생은 바로 이러한 기능적 권력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전 형사소송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규문주의 시대를 벗어나 기소와 심판 기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검찰이 생겨났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집중되어 있던 경찰기관으로부터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검찰이 생겨났다. 비록 각 나라의 기존 통치 구조와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분리의 방향은 형사소송절차의 하위 단계로부터 또는 상위 단계로부터 상이하지만, 공통된 목적은 기능에 따른 권력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었다.

1) 강성용,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수사권 조정 논의에 즈음하여-”, 刑事政策 제30권 제2호(통권 제55호 : 2018. 8.)의 일부를 발췌, 요약, 수정한 리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논거, 인용을 위해서는 刑事政策 제30권 제2호의 원 논문을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을 탄생하게 한 원칙이 오히려 검찰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이는 일제 식민지 경찰국가 체제로부터 해방 이후 정치권과 결탁하여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 등을 자행하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서-경찰 팹쇼보다는 검찰 팹쇼가 낫다는 이유로-제왕적 검찰을 탄생시켰던 역사에서 기인한다. 이를 위하여 1954년 형사소송법 정부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였고, 1961년 형사소송법 그리고 1962년 헌법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에 참여하였던 검찰 출신 엄상섭 의원이나 한겨만 검찰 총장조차도 조만간 기능적 권력분리를 통한 수사과 기소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도 동 원칙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실패하여 왔다.

기능적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법집행 권력은 연속되지만 각자의 완결성이 보장되는 수사와 기소라는 기능별로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 간 상호 합의를 조건으로 법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역사적 배경을 기화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인해 합의가 명령으로 바뀌면서 완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각 연속된 기능별 분리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 의한 직접 수사권 행사로 합의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능별 분리가 무너졌다. 이는 권력분리가 아닌 독점을 가져오게 왔고, 곧 견제와 균형의 붕괴를 불러왔다.

이제는 검찰을 탄생하게 한 기능적 권력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서, 검찰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6월 청와대 주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검경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비

록 합의안 내용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권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능에 따른 권력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합의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령과 복종이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로 경.검 관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기능적 권력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자연법적 원칙: 기능적 권력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이미 고대에서부터 많은 법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러한 자연법적 원칙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증과 비판을 해왔고, 이들은 각 국가의 시간적.공간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실정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 특성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연역적으로 확립된 원칙(metaprinciple)인 자연법(natural law)을 주창하였다. Locke, Hobbes, Beccaria 보다 훨씬 이전인 그리스 시대 Aristotle의 정치학과 Plato의 고르기아스나 국가와 법 등에 의해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질에 근거한 보편적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학계나 실무상에서 이러한 보편적 원칙은 다양한 법률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인정되어오고 있다. 비교법학자들로서, Wolfgang Friedmann은 행정, 계약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적 측면에서도 보편적 원칙이 관련 국제법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하였고, Ralph Michael은 기능적 방법에 의해 발견되는 다른 법률 체계들 간의 유사성은 사회들 간의 비슷한 필요에 대한 증거나 순환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깊은 전 세계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실무상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나 그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등 국제재판소 판사들의 판결들은 국가들 간 법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으로서 자연법은 법의 한 종류로서의 형사절차법을 포함하는 형사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개념으로, 현대의 형사법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법 학자인 George Fletcher는 독일, 영국, 미국 뿐 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특정 법률 체계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적형사이론("universal criminal theory")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Heike Jung은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의 파악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라는 추상적인 분류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원칙("meta-principle")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편적 원칙으로서 자연법은 각 나라의 현행 형사사법제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자연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비교법적 연구의 기준이 된다. 같은 의미에서, Markus Dubber는 Comparative Criminal Law에서 비교법적 분석이 자연법적 원칙과 결합되면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실정법들이 자연적 정의와 일치되는지에 대한 강한 기준에 대한 제시로 이어지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모든 다수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도덕이 갖는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합리적 이성으로 비추어보는 역사적 선례들에 의해서 자연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권력분리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던 고대부터 수천 년 동안 Aristotle, Aquinas, Machiavelli, Locke, Montesquieu 등과 같은 존경받는 사상가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와 현재까지 내려왔다.

이러한 기능적 권력분리의 원칙을 주창한 학자들 중에서도, 현대의 많은 나라의 통치 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Montesquieu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자는 법을 제정, 행정부는 법을 이행, 사법부는 이행을 판단하도록 하여, 연속되면서 서로를 오염시키지 않고 완결성(integrity)을 유지하는 각 단계적 기능별로 권한을 분산하여 모두가 합의(consent)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즉, 정부 시스템의 가장 핵심으로 권력의 분배(division of power)와 기능의 분리(separation of function)를 통해서, 권력 간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임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과 같이 최상위 단계의 포괄적 기능인 입법, 행정, 사법으로의 분립만이 아니라 각 포괄적 기능 내부에서의 세분화된 기능별로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법 철학자 Jeremy Waldron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가지 포괄적 기능으로 구분하는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만 강조되어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배("division of powers")라는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 세 가지 포괄적 기능으로의 분리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기능에 따른 권력분배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구별하지는 않되, 삼권을 분립하는 것만으로 권력분리의 원칙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much

finer-grained division”)된 기능별 권력분리가 견제와 균형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보다 세분화된 엄격한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다른 어떠한 법의 집행보다도 임의적 국가 권한 남용으로 인한 침해되는 이익이 매우 큰 형사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Rachel Barkow에 의해서 지적되었듯이, 바로 형사법의 집행은 인간의 자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침해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형사법상 견제와 균형 원칙의 붕괴는 다른 중요한 자연법적 가치이자 원칙들인 형평성과 투명성, 그리고 법치주의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기능적 권력분리 원칙의 붕괴

우선 비교법적으로 살펴 볼 때, 독일과 프랑스는 기소 및 영장 관련하여 검찰의 재량과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들을 법률로서 두고 있다. 동시에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 상 주어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더 불어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현실에서는 검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 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기소 및 영장청구 관련하여 검찰의 재량과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들을 법률로서—프랑스 및 독일과 마찬가지로—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 또한 법률로서—법률이 아닌 현실적 한계에 의존하는 프랑스 및 독일 보다—확고하게 견제하고 있다.

앞서 비교대상국들인 프랑스, 독일, 영국 및 미국 모두 서로 다른 방식과 정도로 기소 및 수사에 관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소 및 수사에 관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가 전무한 상

황이다. 따라서 비교대상국들과 같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기능인 기소가 아닌 수사와 관련된 권한으로 부터라도 검찰을 분리시킴으로써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고 있는 비교대상국들에 비해—더욱 크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수사과 기소 분리의 높은 필요성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검찰은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마저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비교대상국들과 다르게 조직 내 대규모 수사관들을 집행 기관으로서 두고 있고, 심지어 감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까지 두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 규정만이 아니라,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복종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들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하나의 팀의 동등한 일원이 아닌,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명하복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해임·체임요구권 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검찰이 본연의 강력한 권한이자 기능인 기소 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권한이자 기능인 수사까지 지배를 통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자연법적 원칙으로서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완결성이 보장되는 연속된 기능에 따른 분리 및 모든 부서의 합의를 전제로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 권력 내부도, 특히 그 중에서도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큰 형사법집행 권력도 기능에 따라 엄격하게 세분화하여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고, 각 기능이 합의를 전제로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인해 이런 합의가 명령으로 바뀌면서 완결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 각 연속된 기능별 분리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 의한 직접 수사권 행사로 합의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능에 따른 분리가 무너졌다. 이는 권력분리가 아닌 권력독점을 가져오게 왔고, 곧 견제와 균형의 붕괴를 불러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권력분리, 견제와 균형의 실패는 검찰의 임의적인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검찰 출신 임수빈 검사에 의해서 지적되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임의적 권한 남용은 표적 수사, 타건 압박수사, 심야조사, 피의 사실공표 등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과 잘못된 공소제기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검찰 수사 과정 중 수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전직 대통령, 기업 회장 등까지도 자살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대로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한 불행사는 부당한 영장의 불청구 및 불기소로 이어져 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막을 뿐더러, 때로는 수사지휘권과 결합하여 검사의 범죄 행위 또는 검사 출신 전관을 변호사로 고용한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사건의 이송을 명하여 불기소하는 방식으로 특정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기능에 따른 권력분리,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부재는 검찰의 임의적인 권한의 과도 또는 과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 형사사법정의로서 형평성, 나아가 궁극적으로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시사점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심지어는 국가라는 개념이 인정되기 전부터, 인간의 내재적 본성에 근거하여 인정되어 오던 만고불변의 자연법으로서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현대 형사사

법구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탄생하게 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판으로부터 기소를, 다른 국가에서는 수사로부터 기소를 분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 의하여 검찰을 탄생시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붕괴되었다.

우리나라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에 관한 아무런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인 영장의 청구에 대한 재량적·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나아가, 징계·해임·체임권 등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인적·물적 자원으로 지원되는 실질적인 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해서까지 지배적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다르게 검찰 본연의 강력한 권한이자 기능-기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비교 대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기능에 따른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준수를 위하여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일하게 우리나라 검찰만이 다른 하나의 강력한 권한이자 기능-수사-까지 지배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권력분리 실패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검찰 권한의 임의적 과도 또는 과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평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공평한 법집행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 및 법치주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들은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다. 모든 권력을 가진 인간은 불신되어야 한다. 이제는 검찰을 탄생하게 한 기능적 권력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서, 검찰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PSI](#)

경찰공무원의 유머감각과 직무열의 관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임운식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유쾌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을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유머감각은 스스로 즐거워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개인의 능력(Franzini, 2001)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회식이나 모임장소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찰조직에서 유머감각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 조직구조와 문화적 특성,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유머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업무도 대민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체감안전도·치안고객만족도와 같이 경찰도 치안행정을 시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치안 성과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경찰조직에도 여성경찰관이 많이 영입되면서 조직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머는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여 개인의 직무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각을 발휘한다면 조직의 근무환경은 부드럽게 바뀔 것이며,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높여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재치와 부드러운 유머로 위기를 넘기면 어떨까? 그리고 유머러스한 경찰관은 업무에 있어서 열의가 높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이 연구에서는 유머감각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열의는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마음의 상태(Schaufeli(2006)로 개인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여러 조직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연구 현황

유머감각은 구성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유머감각)와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부하가 지각하는 리더의 유머감각)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구성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머감각은 청소년 대인관계 기술(최명선, 2007), 호텔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성향(이종남·전미향, 2006), 레스토랑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진양호 등, 2012),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경영성과(임미화, 2011), 감정부조화와 고객지향성(류지연, 2011), 보육교사의 직무소진(김정희, 2013),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기술(장해순·이만제, 2014), 조직성과(이덕로·김태열, 2009), 긍정심리자본(한정섭, 2017)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레스토랑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배세정, 2012), 부하의 군 생활 적응(구남웅·최태산, 2009)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머감각은 대인관계기술,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조직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유머감각을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문대상 및 변수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유머감각이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는데, 그 중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채우지 못해 결측치가 발생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유머감각으로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① 때때로 나는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해 낸다. ② 나는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에 자신이 있다. ③ 사람들은 내가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④ 나는 많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재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나는 어떤 웃긴 말로 긴장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⑥ 나는 사람을 웃기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⑦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솜씨가 좋다고 한다. ⑧ 친구들은 나의 재치 있는 말에 주목한다. ⑨ 나는 유머를 사용하여 한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 ⑩ 유머의 사용은 나를 편하게 한다. ⑪ 나는 친구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유머를 사용한다. ⑫ 나의 솜씨 있는 말재주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 등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계급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무열의로서, 직무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활력, 헌신, 몰두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활력의 설문문항은 ① 나는 한 번에 장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② 나는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쉽게 원기를 회복한다. ③ 나는 일을 하면서 원기 왕성함을 느낀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헌신의 설문문항은 ① 내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② 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열정적이다. ③ 나의 직무는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④ 나는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일은 도전적이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몰두의 설문문항은 ①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②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직무 이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잊는다. ③ 나는 나의 직무에 푹 빠져있다. ④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일에 매우 몰입해서 한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주요 결과

경찰공무원의 유머감각이 직무열의(활력, 헌신, 몰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유머감각이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계급을 통제하였을 때 유머감각은 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26, p<.001$). 즉 자신의 유머감각을 높게 인식하는 경찰공무원일수록 활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머감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계급을 통제하였을 때, 유머감각은 헌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18, p<.001$). 즉 자신의 유머감각을 높게 인식하는 경찰공무원일수록 헌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머감각이 몰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계급을 통제하였을 때, 유머감각은 몰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1, p<.001$). 즉 자신의 유머감각을 높게 인식하는 경찰공무원일수록 몰두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모형의 R2값을 비교해 보면 활력이 20.2%, 헌신이 22.0%, 몰두가 18.6%로 헌신이 활력 및 몰두보다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활력이 .426, 헌신이 .418, 몰두가 .441로 몰두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계급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조절변인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유머감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찰공무원일수록 직무열의(활력, 헌신, 몰두)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특히 유머감각은 직무열의의 요소 중 몰두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오늘날 경찰의 활동은 서비스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조직구성원들도 업무로 인한 소진,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머감각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경찰조직도 유머감각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보다 서비스 지향적 치안행정을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 개인들의 유머감각이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경찰공무원 개인들의 유머감각이 직무에 대한 열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조직차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유머감각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등 경찰 교육기관에서 유머감각관련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조직 내 직무교육시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유머감각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찰대학 리더십센터 내 유머감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리더의 유머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겠다. 넷째, 유머감각 질문검사지를 활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유머감각정도를 평가하고 인사배치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예컨대 대민서비스, 홍보, 교육부서 등에 유머감각이 높은 경찰공무원을 배치한다면 업무에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머감각은 경찰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머감각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은 부드러운 경찰관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보다 친근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유머를 활용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증진시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개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유머감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대구지역 경찰공무원들에 한정되어 표본이 수집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리더, 동료 등 그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¹⁾PSI

1)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경찰공무원의 유머감각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민간경비학회보, 2016년)의 내용을 수정 및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치안리뷰” 현장의 소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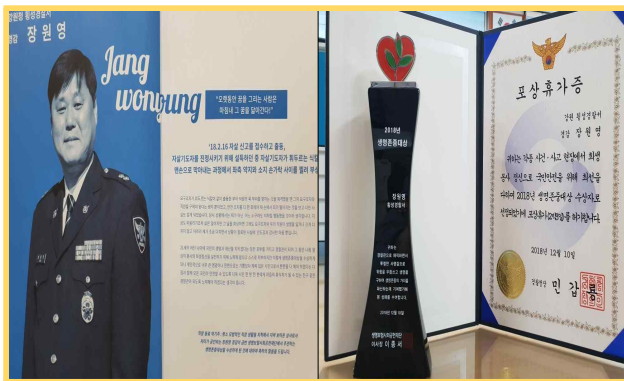
강원청 횡성경찰서 경감 장원영



◎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21세의 젊은 청춘이었던 젊은이가 국가의 사회 안녕과 국민께 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새내기 경찰관으로써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벌써 26 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경찰이 된 저는 올 해 3월말 까지 강원청 원주경찰서에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횡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부임되어 근무하고 있는 장원영 경감입니다.

◎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긴 세월만큼이나 그 동안 좋은 날과 힘겨운 날도 수 없이 많이 겪었으나 올 해 설날 원주경찰서 복원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며 자살기도자 난동 현장에서 자살기도자가 부하 직원을 향해 휘두른 식칼을 목격하고는 부하직원의 생명이 위험함을 막으려 저도 모르게 자살기도자가 휘두르는 칼날을 막아내다 좌측 손을 다쳐 22바늘 가량 봉합수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손의 신경에 마비 증세가 있

고 어찌면 평생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를 그 날의 공상으로 인해 이렇게 자살기도자와 동료직원의 생명을 구한 의인으로 생명존중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생각만 해도 섬뜩한 그 날의 일이 한편으론 아직 까지도 절망의 끝에 서있는 많은 사람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경찰공무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 당시 자살기도자를 구조할 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시 저는 원주경찰서 복원지구대장으로 설 특별방범 기간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비상근무 기간이었으며 때마침 설날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직원 동원과 설날 특별방범기간으로 근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신해 자원 근무 중이었는데, 오후 16:44경 자살기도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인 강원도 원주시 〇〇로 〇〇번길 88-7, 3층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 채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기 힘들다. 설이라서 더 힘들다. 자살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원주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부하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자살기도자가 3층 옥상 난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고, 우측 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내가 자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모두 죽이겠다”면서 자신의 목과 배에 자해를 시도하여 배와 목 부위에 피가 나는 상황에서 식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어 자살기도자의 건강상태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습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상황실에 위기협상팀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방공동대응을 요청한 후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현장에서 자살기도자의 투신에 대비 소방과 협조하여 에어매트를 설치한 후 경찰서 위기협상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흉기를 든 자살기도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지킴이 강사인 피추천인이 끈질긴 설득과 회유를 하여 안정을 찾아가던 자살기도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옥상 난간에 올라서 뛰어내리려하였고, 현장에 있던 김00 경위가 본능적으로 투신을 막으려고 자살기도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내리자 자살기도자가 김00 경위의 목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고 이를 목격한 제가 너무 급박하여 몸을 날려 자살기도자가 휘두른 식칼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자살기도자의 칼을 빼앗은 후 더는 자해하거나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보호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 사고 이후 변화된 생활상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26년 경찰관으로써 근무하는 동안 작은 부상은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큰 부상을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저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동료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되었으나 저의 동료가 피습을 당하는 위기와 제가 직접 이렇게 공상을 입게 되고 또한, 주변에서 공상이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 동료경찰의 공상으로 인한 아픔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현재 제가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동료강사 일을 더욱 열정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올 해 경찰청 복지과에서 시행한 제주도 제4회 공상경찰관 부부힐링과정에 경찰청 운영진과 진행을 함께 하면서 나보다 더욱 힘들고 지친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때론 웃음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며 마음의 병을 치유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저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경찰조직에 더욱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 치료 과정에서 힘들셨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료와 후배 경찰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공상을 입은 후 공상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공상을 입은 상태에서 제 스스로 증빙관계 서류 등을 모두 챙겨야 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공상

신청을 하였더니 병원에서 실수한 부분을 (저의 경우는 좌측 손이 다쳤는데 병원 측에서 우측 손이 다친 것으로 잘못 기재한 부분) 제가 소명을 다시해서 재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고 공상 당한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공상 승인도 되지 않는다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였던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의 경우는 공상 신청이 승인되었지만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 선, 후배 경찰관 분들에게서는 국민을 위한 봉사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으나 다치지 않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공상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난관에 봉착하다보니 스스로 힘겨움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루속히 열심히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공상을 당하거나 순직하는 우리 경찰 동료들이 공상 승인과정 등에서의 제도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의 안녕과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경찰로 말입니다. 전국의 선·후배 동료 경찰관 여러분 국민 한분 한분에게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경찰관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경찰관인 것과 우리 경찰조직의 일원임이 그리고 우리 경찰 동료로서 한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과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우리 경찰관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끝으로 일선 동료(선후배) 경찰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사고를 겪은 후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내 옆의 직장 동료를 위해 양보도 할 줄 아는 나 혼자 아니라 우리경찰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강하고 현명한 경찰로 때론 국